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최찬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101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최찬규, 박태순, 김재국
유재수, 한명훈, 설호영
최진호, 선현우, 황은화
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- 청년인구 감소, 접근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헌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산시 헌혈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혈액관리기관의 원활한 혈액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 헌혈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6조)
- 적극적인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)
- 한마음혈액원을 추가함(안 제10조제3항제1호)

3. 일부개정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1

4. 현행 조례 : 붙임 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3

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7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5

【붙임 1】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”을 “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임시 헌혈 장소 지원)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안산시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 등 공공장소
2.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위탁기관에서 관리·운영하는 장소
3.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

제7조(종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표창”을 “「안산시 표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”으로 한다.

- ③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안산시에 있는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(전혈, 성분헌혈)을 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「안

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안산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, 안산화폐 등의 지급방법, 지급액, 지급한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종전의 제7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최신 관련 정보”를 “최신 정보”로 한다.

제9조(종전의 제8조) 제2항제3호 중 “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 대응”을 “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자원봉사활동 등 및 지원”을 “자원봉사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제2항 중 “보건소장”을 “상록수보건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적십자혈액원”을 “적십자혈액원, 한마음혈액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최찬규 의원 대표발의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헌혈권장활동”이란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3과 「<u>혈액관리법시행령</u>」 제2조의3에 따라 권장한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「<u>혈액관리법시행령</u>」 제2조의3제2항-----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(임시 헌혈 장소 지원) 시장</u> <u>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안산시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 등 공공장소</u></p> <p>2. <u>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위탁기관에서 관리·운영하는 장소</u></p> <p>3. <u>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</u></p>
<p><u>제6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</u> 시장은 필요하다고</p>	<p><u>제7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</u> -----</p>

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 및 정보 제공)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

-- 예산의 범위에서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안산시에 있는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(전혈, 성분헌혈)을 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「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안산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, 안산화폐 등의 지급방법, 지급액, 지급한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-----
----- 「안산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-----
-----.

제8조(홍보 및 정보 제공) -----

및 최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8조(헌혈추진협의회) ① (생략)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·2. (생략)

3.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 대응

4. 자원봉사활동 등 및 지원

5. (생략)

제9조(구성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과장으로 한다.

1. 교육(청)기관, 경찰서, 군부대, 의료기관, 민간경제단체(상공회의소 등을 말한다), 지역 언론기관, 자원봉사센터,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·임직

-- 최신 정보-----
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헌혈추진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

4.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

5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 상록수보건소장---.

③ -----

-----.

1. -----

적십자혈액원, 한마음혈액원

<p>원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보건의료 관련 전문가</u>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제10조</u> ~ <u>제16조</u> (생략)</p>	<p>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3.·4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1조</u> ~ <u>제17조</u> (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)</p>
--	--